

## 서울특별시서초구책사랑방운영수입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안 번호	100
----------	-----

제출연월일 : 1999. 9. 10.

제 출 자 : 서초구청장

### 1. 제안이유

우리구 책사랑운동의 일환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도서판매시설(책사랑방)운영에 관하여 운영 이익금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용도 지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책사랑방운영수입금관리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기금의 재원은 도서공급업체와의 약정에 의한 위탁판매수수료(이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함.(안 제3조)
- 기금의 용도는 서초구 관내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결식아동 등 불우이웃돕기기금 등으로 사용(안 제4조)
- 구청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1개월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하여 구의회에 제출 (안 제7조)
- 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초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안 제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 지방재정법 제110조(기금의 운용 등)

#### 나. 예산조치 : 없음

#### 다. 기타사항(입법예고) :

##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서초구책사랑방운영수입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초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판매시설(이하 “책사랑방”이라 한다.) 운영 수입금 등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서울특별시서초구책사랑방운영수입금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책사랑방”이라함은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시중의 도서판매업체와 약정하여 도서를 위탁판매하기 위하여 설치한 서초구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수입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구청장이 도서판매업체와 약정한 책사랑방의 도서 위탁판매 수수료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만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서초구 관내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결식아동 등 불우이웃돕기에 관한 지원
2. 책사랑방 운영에 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최소필요경비로 구 청장이 정하는 경우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구청장이 관리·운용하며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6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의 사용은 용도 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호에 의하여 지출되는 경비는 지출당시 적립금액의 30%를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체쇄후 1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초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